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. 5. 27 선고 2020가단52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5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채굴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한소희

별지